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항목	내용																
①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촉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립준비청년(보호종료 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 의뢰서 제출) 																
③ 제공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기준 : 기관장 1인(의료인 또는 제공인력 요건을 갖춘 자), 관리책임 1인(기관장과 중복 가능), 상담실 33㎡, 제공인력(기관장이 대체가능) ※ A형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 2명 충족, B형은 제공인력 1명, 기관장은 제공인력 겸직 가능 ※ B형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A형과 B형 모두 제공할 경우, 상담실 면적은 12㎡ 구비 (임차, 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증빙 필요)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5%;">A형</th> <th style="width: 35%;">B형</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 가격</td> <td>60,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54,000원</td> <td>63,0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6,000원</td> <td>7,000원</td> </tr> </tbody> </table> - [A형] 심리 문제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 [B형] 차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재판정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 준비 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구분	A형	B형	서비스 가격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7,000원				
구분	A형	B형															
서비스 가격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7,000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서비스 종류</th> <th style="width: 5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15%;">제공 시간</th> <th style="width: 15%;">제공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전·사후검사</td> <td>·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td> <td>90분</td> <td>사전·사후 각 1회</td> </tr> <tr> <td>서비스제공 (1:1 원칙)</td> <td>·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td> <td>회당 50분</td> <td>주1회 (총8회)</td> </tr> <tr> <td>종결상담</td> <td>·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td> <td>-</td> <td>1회</td> </tr> </tbody> </table> ※ 사전·사후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기본3개월(10회)원칙]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 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제공 시간	제공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 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제공절차 제공기관 등록·상담 → 제공계약서 작성 →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사전검사)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종결상담 및 피드백 제공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p>
<p>⑥ 집단규모</p>	<p>○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1:1)</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등록절차 :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등록 ○ 신청 절차 -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 서비스 유형(A, B) 선택하여 신청 후 이용자 선정 및 제공기관 안내</p> <p>○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1. 경력산정기준 : 각 서비스 별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① 시간제근무경력으로 인정 - 1년 : 1,920시간, 2년 : 3,840시간, 3년 : 5,760시간, 4년 : 7,680시간, 5년 : 9,600시간 ② 시간단위(주단위, 월단위 등)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1개 이상)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20.01.01.~2020.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허위 경력으로 확인될 경우, 제공인력 등록 취소</p>

